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수임인	성 명	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위임인과의 관계	
	주 소			
위임인	성 명	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 소			
위임인은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「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. 20 년 월 일 위임인 (자필서명)				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환자본인	성 명		연락처	
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 소			
신청인	성 명		환자와의 관계	
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연락처	
	주 소			
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	열람하고자하는 내용 및 사유			
	사본발급 내용 및 사유			
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은 위 신청인()이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·제2항 및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위의 동의 내용과 같이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,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데 동의합니다. 20 년 월 일 본인 (또는 법정대리인) (자필서명)				

※비고: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.

유의사항

다른 사람의 허위서명 등에 의해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·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.

